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41,000,000	28,230,000
일반회계		768,000,000	23,040,000
	일반회계	768,000,000	23,040,000
기타특별회계		61,800,000	1,854,000
	주택사업특별회계	650,000	19,5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3,300,000	399,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80,000	47,4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00,000	150,000
	치수사업특별회계	1,800,000	54,0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30,000	39,900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330,000	9,900
	청소사업특별회계	35,800,000	1,074,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700,000	51,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10,000	9,300
공기업특별회계		111,200,000	3,336,000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65,300,000	1,959,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5,900,000	1,377,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46,95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및 다음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번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5. 재해 대책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 경비